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4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위성곤·김기표·서영교

김성환 • 박균택 • 이건태

전재수 · 한병도 · 박희승

임오경 · 이재관 · 조인철

허 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소방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또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약 40%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①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防煙)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특정소방대상물에 비
	치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
	크) ①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철
	도 및 도시철도 시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일산화탄소 등
	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防煙)마
	스크(이하 이 조에서 "화재대
	피용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거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